

# 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 ACI Insight

20대 국회 발의 회계투명성 제고 · 지배구조 선진화  
법안 소개

2016년 불성실공시법인의 감사기구 ·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 계획서 실태

## Depth Interview

부실 계열사 지원의결의 배임죄 성립과 감사의 면책

## Opinion Leader's View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 - 투명한 회계를 위한 첫걸음

## Case Study

회사 선택에 의한 감사제도 변경과 기존 감사의 거취 및  
해임 시 배상 문제

## Beyond Data

주요 지수 기업의 감사기구 설치 및 공시현황

## Global ACI

기업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이사회 구성  
(Building a great board)

일본 기업의 부정에 관한 실태조사  
(2016 Fraud Survey)

Vol. 01 | Jan. 2017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

# 인사말

---

삼성KPMG 김교태 CEO

삼성KPMG는 2015년 4월,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를 설립한 이래,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기업의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는 국가경제는 물론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고 재무제표의 진실성과 재무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감독당국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과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유년 새해를 맞아 창간하는 「감사위원회 저널」은 감사위원·감사님을 아우르는 감사기구에 대한 유용한 콘텐츠 제공 뿐 아니라 감독당국과 일반인도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로 자리 잡으며, 삼성KPMG ACI가 감사기구·제도 연구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지에는 국내외 감사기구 실태, 법규 개정 동향,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삼성KPMG ACI의 심도 있는 분석과 제언을 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회 저널」이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변화의 방향성 제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삼성KPMG ACI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힘쓸 것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을 반영하여 향후 「감사위원회 저널」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창간호에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발간물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송옥렬 교수님과 지현미 교수님, 창간호 축사를 통해 삼성KPMG ACI 활동을 격려해 주신 이만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발간 축하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만우 교수

감사기구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심도 있게 다루는 「감사위원회 저널」이 삼정KPMG ACI에 의해 발간된 것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지원기관을 개소해 업계 최고수준으로 이끌고 있는 삼정KPMG의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2015년 12월에 출간한 국문 단행본 「감사위원회 핸드북」에는 법적·제도적 주요 사항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설치, 운용 및 구체적 활동수행과 관련된 필수적 정보가 충실히 수록돼 있습니다. 주제가 적절하고 참신하며 내용이 충실하고 이해하기 쉬워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3쇄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 저널」은 분기별 발간을 통해 감사제도 전반의 흐름과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실무적 콘텐츠의 업데이트를 충실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투명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도 업계 이슈의 공론화와 공신력 있는 감사제도 관련 통계 제공에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학계와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모시고 우리나라 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진적 사례 소개에도 충분한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와 회계업계가 주된 독자층이겠지만 학계, 언론계, 금융감독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고려해 적절한 편집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저널」의 기획과 개념화 단계부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신 삼정KPMG 김교태 CEO님과 서원정 감사부문 대표님의 노고에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열과 성을 다한 삼정KPMG ACI의 김유경 상무이사를 비롯한 스텝 여러분의 노고에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간호 집필진의 수고에도 감사드리며 미래에 집필진으로 수고하실 전문가님께도 선금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저널」이 각 기업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을 비롯해 회계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널리 읽혀져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저평가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발간 후기

---

삼성KPMG 서원정 Audit 부문 대표

지난 2015년 12월, 삼성KPMG ACI는 업계 최초로 국내외 감사위원회 법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실무 요령, 해외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 선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담은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보다 많은 감사위원·감사님들을 대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기구 실효성 제고에 관한 시의성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저널」은 크게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CI Insight’에서는 회계투명성·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감사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Depth Interview’에서는 감사제도 또는 감사기구와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에 관한 전문가와의 대담 내용을 담았습니다. ‘Opinion Leader’s View’에서는 ACI 자문교수를 포함한 사회 저명인사의 시사성 있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Beyond Data’에서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에서 축적한 감사기구 및 감사제도 관련 DB를 객관적으로 도표화해 메시지를 전달 드리려 하였습니다. ‘Case Study’에서는 실제 감사위원회 활동 중 직면할 수 있는 특정상황을 사례분석 형식으로 풀었으며 ‘Global ACI’에서는 해외 KPMG ACI의 연구자료 중 감사위원·감사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본지는 회계법인에서 발간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자에 편향된 시각을 벗어나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국내 기업의 감사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부족한 내용을 기꺼이 검토해 주시고 축하까지 써주신 이만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삼성KPMG의 김교태 CEO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간호 집필진으로 참여해 주신 송옥렬 교수님과 지현미 교수님, 발간을 위해 동분서주한 ACI 리더 김유경 상무와 이하 ACI 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성KPMG ACI는 「감사위원회 저널」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본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독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 ACI Insight

20대 국회 발의 회계투명성 제고·지배구조 선진화 법안 소개 05

2016년 불성실공시법인의 감사기구·사외이사 현황과 개선계획서 실태 12



## Depth Interview

부실 계열사 지원의결의 배임죄 성립과 감사의 면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송옥렬 교수 17



## Opinion Leader's View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 - 투명한 회계를 위한 첫걸음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지현미 교수 21



## Case Study

회사 선택에 의한 감사제도 변경과 기존 감사의 거취 및 해임 시 배상 문제 25



## Beyond Data

주요 지수 기업의 감사기구 설치 및 공시 현황 27



## Global ACI

기업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이사회회의 구성  
(Building a great board) 28

일본 기업의 부정에 관한 실태조사  
(2016 Fraud Survey) 31

## 20대 국회 발의 회계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선진화 법안 소개

삼성KPMG ACI 엄수진 선임연구원  
(sujineom@kr.kpmg.com)

- 2016년 5월 30일 개원된 20대 국회는 기존 그 어느 국회보다도 회계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개정 발의가 활발함
- 본고는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대 국회 발의안 중, 지배구조 개선 또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제·개정 취지로 하는 제안을 요약 및 정리하였음

### 머리말

- 최근 수 년 간 국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는 비판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sup>1)</sup>이 올해 6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회계·감사의 적절성’ 부문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올 3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추정 영업손실 5조 5천억 원 중 약 2조 4천억 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뒤늦게 반영함<sup>2)</sup>
  - 저조한 회계투명성과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는 당시 회기(19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하였고, 20대 국회는 상기 안에 담겨있던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음

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 올 7월 기준, 70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금액 합계는 430억원에 달함

## 상법 개정 발의안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중 상법에 관한 것은 11월 말 기준 18건이며, 그 중 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표 1>에 정리함
  - 본 국회의 상법 개정 방향의 특징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이사 및 회사의 책임 강화, 기업 집단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주주총회 실효성 확보로 구분할 수 있음

표1. 20대 국회 상법 발의 동향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함 (김종인 의원 등 122인 「2000645」, 채이배 의원 등 20인 「2001463」, 노회찬 의원 등 10인 「2002091」)</li> <li>●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김종인 의원 등 122인 「2000645」)</li> </ul> <p>※ [관련 해외 동향] 미국 NYSE 상장규정 303A.04항은 상장회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명위원회 및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사외이사 결격요건 확대 (김종인 의원 등 122인 「2000645」, 채이배 의원 등 14인 「2003516」)</li> </ul>
이사 및 회사의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출자회사(모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 (김종인 의원 등 122인 「2000645」, 채이배 의원 등 20인 「2001463」, 노회찬 의원 등 10인 「2002091」, 이종걸 의원 등 10인 「2003254」)</li> </ul> <p>※ [관련 해외 동향] 미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같이 기업그룹을 단일회사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경우에 한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인정<sup>3)</sup>. 캐나다의 연방사업회사법은 주주대표소송을 1970년대에 명문화하였고,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 혹은 자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제소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를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sup>4)</sup>. 일본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100%(완전자회사)이고,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이 모회사 전체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sup>5)</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소송 원고가 될 수 있는 주주의 지분율 제한 요건 폐지<sup>(*1)</sup>, 노동조합도 대표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함 (노회찬 의원 등 10인 「2002091」)</li> <li>● 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 시 과실을 원고(주주)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노회찬 의원 등 10인 「2002091」)</li> <li>● 이사의 책임을 연봉의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00조 제2항을 삭제 (노회찬 의원 등 10인 「2002091」)</li> </ul>

(\*1) 현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지분을 보유하여야 이사의 행위 유지 청구와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가능

3) 권재열,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상 다중대표소송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09.

4) 권재열, "다중대표소송의 최근 국제적 동향 및 그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2013.06.

5) 이데일리, 박종우, "[입법전쟁]다중대표소송, 해외선 요건 '엄격'...독일 감사회엔 주주·직원 참여보장", 2016.07.11.



### 이사 및 회사의 책임 강화

-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인 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김동철 의원 등 13인 「2000211」)
- 분식회계, 부실경영으로 인한 제재나 손해 발생 시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을 환수 (정태욱 의원 등 10인 「2001210」, 김동철 의원 등 13인 「2000211」)
- ※ **[관련 해외 동향]** 미국 SOX<sup>(\*2)</sup> 제304조에서는 임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회계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임원이 지급받은, 최초 공시일 이후 12개월 동안의 성과급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드-프랭크법 제954조에서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로 인해 초과로 지급된 3년 이내의 성과급을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SEC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민병두 의원 등 12인 「2003034」)

(\*2) 사베인즈-옥슬리 법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 기업집단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 자기주식 처분 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 (박영선 의원 등 10인 「2000106」)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 (이종걸 의원 등 11인 「2003952」)
-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며,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 (박용진 의원 등 10인 「2000837」)
-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마련 의무화 (민병두 의원 등 10인 「2002951」)

### 주주총회 실효성 확보

-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내부자거래를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이언주 의원 등 10인 「2002408」)
- ※ **[관련 해외 동향]** 홍콩이나 중국 상장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외부차입, 내부거래 등을 할 때 이사회 승인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의무화 (노회찬 의원 등 10인 「2002091」)
- 집중투표제 의무화 (김종인 의원 등 122인 「2000645」, 노회찬 의원 등 10인 「2002091」)

## ■ 상기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3% 의결권 제한<sup>6)</sup>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은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지분의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이 있으나,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기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선임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미 지배주주가 원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음

6) 상법 제542조의12의 제3항에 따라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합계'를 기준으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단독주주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됨

- 단, 올 8월부터 국내 금융회사는 1명 이상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를 다른 이사 후보와 분리하여 선임해야 함<sup>7)</sup>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

- 2014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되었음. 20대 국회에서는 동 전부개정안에 있던 내용 뿐 아니라 신규 제안까지 추가하여 다수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감사에게 부여하도록 하거나, 유한회사·대형비상장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2014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함
  - 상기 내용 외에도 지정감사제의 확대, 분식회계 발생에 대한 회사와 회계법인 모두의 책임 강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증대 등이 주목할 만함

표2. 20대 국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발의 동향

외부감사인 독립성 강화
• 외부감사인의 선·해임 권한을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에 이관 (김해영 의원 등 14인 「2000792」)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를 확대 (김해영 의원 등 14인 「2000792」)
•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외부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간 의무적으로 선임 (엄용수 의원 등 12인 「2003099」)
•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 (채이배 의원 등 12인 「2003508」)
• 매 사업연도 1개월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채이배 의원 등 12인 「2003508」)
• 외부감사인은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의원 등 12인 「2003508」)
•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별도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의원 등 12인 「2003508」)
• 임의규정인 외부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재산상태의 조사 권한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엄용수 의원 등 12인 「2003099」)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 분식회계 책임 강화

- 분식회계 발생 회사의 퇴임한 임원이 2년 간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 (제윤경 의원 등 19인 「2002278」)
- ※ [관련 해외 동향] 영국의 이사 자격박탈법(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of 1986)에 따르면, 사내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사는 최대 15년간 이사로 취임할 수 없음
-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과 (채이배 의원 등 12인 「2003508」)
- 업무집행지시자, 회계업무 담당자 등의 분식회계 시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 (김선동 의원 등 12인 「2002999」)
- 회계법인 외에 감사대상 회사도 손해 배상공동기금 적립 의무화 (채이배 의원 등 12인 「2003508」)
- 회사의 분식회계 및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각각 최대 20억 원,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김해영 의원 등 14인 「2000792」)
- 부실감사 발생 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 (김해영 의원 등 14인 「2000792」, 박용진 의원 등 10인 「2001058」)
- 사업보고서에 외부감사인의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채이배 의원 등 12인 「2003508」)
-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제 대상 외부감사인에서 제외 (김영주 의원 등 10인 「2002933」)

### 회계품질 제고

- 유한회사, 대형비상장상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김해영 의원 등 14인 「2000792」, 배덕광 의원 등 10인 「2002348」)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해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 공시 및 개선권고 (김해영 의원 등 14인 「2000792」, 제윤경 의원 등 19인 「2002278」)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증대

-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한도를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 예상액의 총합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 (김선동 의원 등 12인 「2002999」)
- ※ [관련 해외 동향] SOX 제806조 (a)항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SEC는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징구한 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

- 금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이미 감사위원 분리 선출, 위험관리 위원회 의무 설치,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정보제공 의무 등 진보적인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11월 말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개정안 중 금융회사 임원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sup>8)</sup>,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원의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인상하는 것<sup>9)</sup>이 포함되어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 요건 강화,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투명성 제고, 간접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확장 방지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기업집단 지배구조 정보 공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안들이 주를 이룸

표3. 20대 국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발의 동향

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채이배 의원 등 20인 「2002780」)
● 두 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 (채이배 의원 등 20인 「2002780」)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및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100분의 50(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 조정 (박찬대 의원 등 10인 「2002073」)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 (채이배 의원 등 11인 「2001450」, 제윤경 의원 등 18인 「2000854」, 이연주 의원 등 10인 「2003994」)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도 포함 (채이배 의원 등 11인 「2001450」, 제윤경 의원 등 18인 「2000854」)
●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주주의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으로 강화 (김동철 의원 등 10인 「2000111」)

8) 박용진 의원 등 10인 「2000969」

9) 정부 「2004017」

### 기업집단 지배의 투명성 제고

-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현 법률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 (최운열 의원 등 24인 「2002080」)
-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원으로 명시 (이언주 의원 등 10인 「200399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동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박용진 의원 등 11인 「2000146」, 박영선 의원 등 10인 「2000107」)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분할 시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여 회사 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 (제윤경 의원 등 10인 「2003845」)
- 해외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 해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화 (김영주 의원 등 11인 「2002934」, 이언주 의원 등 10인 「2002401」, 김용태 의원 등 11인 「2000759」, 김동철 의원 등 14인 「2000430」)
- 자산총액 50조 원 초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 계열회사 및 친족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도 포함하도록 함 (채이배 의원 등 16인 「2001359」)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시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 (이언주 의원 등 10인 「2002401」)

## 맺음말

- 회계정보의 충실한 공시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변화를 추진하는 초기에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강제성을 띤 권고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함. 따라서, 본고에서 소개한 20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은 긍정적인
  -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결국 무산된 것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진력을 가져가야 할 것임
  - 또한 법률 및 제도의 내용은 선진국 못지않으나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약해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위법이나 편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지 않도록, 제재의 실효성도 높여야 함
- 아울러, 투자자의 면밀한 감시와 공시투명성·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기업에게 법적 제재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자 역시 회사의 장기 발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6년 불성실공시법인의 감사기구·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계획서 실태

삼성KPMG ACI 이민형 Manager  
(minhyunglee@kr.kpmg.com)

- 상법은 이사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감사에게 유지청구권을 보장하며, 이사의 직무를 상시 감사하여 회사 업무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규정함. 또한 감사는 내실있는 직무환경을 보장 받기 위해 이사에게 영업보고를 상시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시정책 수립과 집행의 검토 책무도 지님
- 미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감사인 징계, 제재 및 업무 해임을 할 수 있다 규정하며, 여기에는 불성실공시 영역도 포함됨
- 본 조사는 한국 증권시장 내 불성실공시법인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은 유가 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법인은 주로 감사기능이 열위에 있는 비상근감사제도를 채택함
- 대체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은 감사기구 활동내역을 내실 있게 공시하지 아니하며, 일부 법인의 상근감사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파행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 반복하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법인의 지정사유는 최초 지정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법인이 마련한 자구계획이 효력이 없었음을 의미함
- 불성실공시법인이 발행한 개선계획서는 전사적인 조직체계 수립, 직무 전문성 강화,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 집단을 통한 자문계약, 이사회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실태 분석 배경

-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 위반행위 혹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음
  - 우리 상법은 이사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감사에게 유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를 상시 감사하여 회사 업무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규정함. 또한 감사는 내실있는 직무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이사에게 영업보고를 상시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시정책 수립과 집행의 검토 책무를 지님
  - 미국 증권선물위원회는 Rule of Practice 102(e)에서 전문가로서 지켜야할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감사인을 징계, 제재 및 업무 해임을 할 수 있다 규정하며, 동 규정은 불성실공시영역을 포함함<sup>1)</sup>
- 본고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감사기구와 사외이사 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해당 법인들의 공통적인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출된 개선계획서<sup>2)</sup>를 통해 해당 법인들이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해 어떤 자구안을 마련하였는지 살펴보고 안내하는 목적임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분석<sup>3)</sup>

- 조사 기간<sup>4)</sup> 내 집계된 불성실공시법인은 총 51개사(100%)로,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사(25.49%), 코스닥시장에서 38개사(74.50%)임
  - 전체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745개사(40.05%), 코스닥시장 1,115개사(59.94%)임을 고려하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높은 비율로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3건(13개사), 코스닥시장에서 49건(38개사)으로 조사되었음
    - 반복하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상장사도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 집중되어있음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사유중복지정)를 시장통합으로 산출한 결과 공시 불이행 37건 (58%) - 공시 반복 20건(31%) - 공시 변경 7건(11%) 순으로 나타났고, 시장별 분류에서도 순위는 동일하였음

1) 미국 OTCMKTS 상장법인인 Musclepham은 경영진에게 제공한 비현금성 보상을 불성실공시하였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현직 감사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벌금징구 및 직무해임 처벌을 받았음. 이는 재무 등 관련된 분석회계가 아닌 불성실공시 책임으로 처벌받은 대표 사례임

2) 불성실공시법인 중 공시업무 위반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와 지정 기간 중 추가로 부과받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국내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은 제외

4) 집계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 부인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을 반복 공시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공시 변경 빈도는 시장 간 상당한 차이가 드러남
- 특히, 반복하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법인은, 반복지정 사유가 최초 지적된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해당 법인에 제재가 발생하였지만 제재에 준하는 법인의 자구계획이 부재하였음을 의미하며, 시장 감독자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sup>5)</sup>

표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공시 반복	공시 변경	공시 불이행	합계(행)
유가증권시장	4건(28.57%)	1(7.14%)	9건(64.29%)	14건(100%)
코스닥시장	16건(32.00%)	6(12.00%)	28건(56.00%)	50건(100%)
시장통합	20건(31.25%)	7건(10.94%)	37건(57.81%)	64건(100%)

Source: 삼성KPMG ACI

표2. 불성실공시 지정 유형

공시 불이행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기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 반복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공시 변경	-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Source: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규정

## 불성실공시법인 감사기구, 사외이사 현황

- (감사기구) 불성실공시법인이 채택한 감사기구는 비상근감사와 상근감사가 비등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나누어 파악하면 그 차이가 상당하였음
  - 유가증권시장 소속 법인은 상근감사제도(6개사, 46.15%)와 감사위원회 제도(5개사, 38.46%)를 주로 선택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소속 법인은 과반이 넘게 비상근감사제도(22개사, 57.89%)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됨

5)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관리종목 이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누계벌점이 15점이 추가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대처임



- 비상근감사는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비해 공시의 적정성 및 허위공시 여부, 공시사항 누락 등의 검토가 부족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기에, 본고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코스닥시장에 집중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비율은 법인이 선택한 감사기구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 수 없음

표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법인의 감사기구 현황

	비상근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합계(행)
유가증권시장	2개사(15.38%)	6개사(46.15%)	5개사(38.46%)	13개사(100%)
코스닥시장	22개사(57.89%)	15개사(39.47%)	1개사(2.63%)	38개사(100%)
시장통합	24개사(47.06%)	21개사(41.18%)	6개사(11.76%)	51개사(100%)

Source: 삼정KPMG ACI

- 감사기구 형태를 막론하고, 불성실공시법인은 감사기구 활동 내역을 상당히 부실하게 공시하는 경향이 드러났으며, 감사기구의 파행 운영도 상당수 발견되었음
  - 불성실공시법인 중 37개사(72.54%)는 운영 중인 감사기구의 실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기구 활동이 전무한 법인도 5개사(9.80%) 집계됨
  - 아울러, 사내상주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공시한 법인도 4개사(7.84%) 파악되는데, 이는 상근감사제도 본연의 목적을 고려해볼 때 직무유기에 상당함<sup>6)</sup>
- (사외이사) 불성실공시법인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파악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지정된 13개사 법인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41.30%로 집계되었고 코스닥시장 내 지정된 38개사 법인은 31.49%로 파악됨
  -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에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나, 전수 조사 결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과반 이하인 법인이 상당하였음.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사외이사 참석률이 92.5%임을 고려한다면<sup>7)</sup>, 불성실공시법인의 사외이사 참석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유가증권시장에서 지정된 법인 13개사의 사외이사 활동현황은 82.77%로 집계되었고, 과반 이하의 활동률을 보인 법인은 2개사(15.38%)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 지정된 법인 38개사의 활동현황은 61.17%에 불과하였고, 과반 이하의 활동률을 보인 법인은 12개사(31.5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6) 상근감사임에 불구하고, 지정된 감사가 개최된 이사회에 12%에 참석한 사례 존재

7) 분석 대상 집단은 2015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49개)중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1개, 중흥건설)을 제외한 48개 민간 대기업집단(2015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발표, 공정거래위원회)

표4. 불성실공시법인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현황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 참석율	사외이사 참석율 과반 이하 법인
유가증권시장	41.30%(13개사)	82.77%(13개사)	2개사
코스닥시장	31.49%(38개사)	61.17%(38개사)	12개사
시장통합	33.82%(51개사)	66.68%(51개사)	14개사

Source: 삼성KPMG ACI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내 자구안 실태

■ 개선계획서<sup>8)</sup>를 제출한 법인은 공시의무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전사적인 조직체계 수립, 직무 전문성 강화, 전문가 집단을 통한 자문계약 체결, 이사회 규정 정비 등이 있음

- (전사적인 조직체계 수립) 불성실공시 관련 사항에 대해 인사고과 및 상벌 반영 의지를 밝혔으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공시 관련 상황 인식과 보고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안내
- (직무 전문성 강화)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누락 및 지연공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직무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교육지침을 정비하며 안내 자료를 배포
- (전문가 집단을 통한 자문계약)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 집단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현안별 주요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반영
- (이사회 규정 수립) 이사회 운영 규정 정비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내실 있는 공시 문화를 유도 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에 경영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표5. 개선계획서 예시

일정	기간	내용	비고
xxxx.xx.xx	수시	공시의무 교육 및 전문과정 등	교육일정 수립
xxxx.xx.xx	D-xx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xxxx.xx.xx		임원,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공시 교육	
xxxx.xx.xx		이사회 운영규정 정비	이사회
xxxx.xx.xx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이사회
xxxx.xx.xx		윤리경영 선언 및 실천	
xxxx.xx.xx		회계법인 등 전문가 집단 자문계약 체결	
xxxx.xx.xx	종료	불성실 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 종료	

Source: 삼성KPMG ACI

8)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와 그 지정 기간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제출요구 받은 법인은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점 이내 벌점 부과

## 부실 계열사 지원의결의 배임죄 성립과 감사의 면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송옥렬 교수

- 우리나라는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집단소송법을 마련하였지만, 소제기의 방법과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실제 활용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제기 건수가 늘어나며, 과거 사내이사에 국한되었던 소제기 대상이 감사 혹은 감사위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의 내용도 분식회계에서 현재는 계열사 부당지원까지 다양화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보다 대폭 증가한 직간접투자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
- 이번 AC Journal Depth Interview에서는 근자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언급되는 부실 계열사 지원의결의 배임죄 성립과 감사의 면책을 관련 분야 전문가인 송옥렬 교수와 진단해 본다.

◇ **삼성KPMG ACI:** 우리나라는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집단소송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간 소제기 방법과 절차 등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제기 건수가 늘어나며, 과거 사내이사에 국한되었던 소제기 대상이 감사 혹은 감사위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의 내용도 과거 분식회계에서 현재는 계열사 부당지원까지 다양화 되었다. 기업공시를 살펴보면 계열사가 발행하는 증권 등에 계열사가 참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지원 결의가 배임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 **송옥렬 교수:** 지원목적이 부실계열사 지원에 해당한다면, 결의에 참여한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이사의 배임판단에 있어 그룹 차원의 경영판단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실계열사를 살리는 것이 그룹 차원에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물론 그룹 차원에서 효익이 기대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사회 결의는 경영판단에 속하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의사결정은 지배주주의 이익이나 관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사회 의 판단에 앞선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 한들, 향후 책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임은 오롯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에 귀속된다.

◇ **삼성KPMG ACI:** 부실계열사의 자금 지원은 배임 여지가 존재한다. 다른 이유로 의결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은 없는가?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완전 판매 등 이슈로 그룹이 해체된 동양그룹을 예로 들어보자. 동양그룹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약 40위권의 거대 기업집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계열사 위험이 전체 계열사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 및 대여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원받는 계열사가 부실계열사여도 문제지만, 지원 후에도 체질 개선이 안 될 것을 알면서 지원하는 행위는 더욱 문제일 것이다. 이런 경우 의결 무효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 **송옥렬 교수:** 국내 신용공여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기거래에 비중을 둔 상법 규정이다.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염두한 것이 아니기에, 지원주체인 회사의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규정은 다소 복잡하게 되어있으나, 요지는 지배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금지하자는 것이므로 계열사 경우에도 규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말씀하신 공정거래법 규정으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 거래에 이사회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가 병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금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 판단 기준은 과도한 이익이 지원객체에 이전되었는지 여부이다. 일종의 터널링을 말한다.

그러나 상기 규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 무효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위반하였다 한들 과징금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상법 내 상장회사 특례 위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기존 증권거래법에 있었던 내용을 상법이 승계한 것인데, 과거 증권거래법에서는 이 규정이 단속규정이 라고 해서 의결 자체가 무효화 되지 않았다. 상법으로 이관된 다음에는 견해가 나뉘고 의결 무효와 관련해 여러 법적 쟁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하는 회사들의 법무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KPMG ACI:** 정리하자면 상법의 경우 지분을 관계가 관건이며, 공정거래법의 경우 과도한 이익이 지원객체에 이전되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위반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나 의결 무효를 결정하진 않는다. 그 외 부당내부거래 충족 요건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앞서 나온 동양 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당시 동양그룹 수장이었던 현재현 회장은 2011년 8월 임원진으로부터

‘동양그룹의 차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접어들어 1년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은 70 쪽짜리 보고서를 받았다고 한다. 내부에서 작성된 이 문건의 내용을 핵심 임원진들은 이미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보고서에는 동양그룹이 차입을 감당할 수 없는 악순환에 진입했고, 특히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의 경우 독자 생존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지원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공시를 확인해보면, 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의결 등에서 이사회 구성원이나 감사위원의 이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감사위원은 이사회 의결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 **송옥렬 교수:** 계열사 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는 경영상 목적, 즉, 지원주체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금 지원 회수 가능성이다. 이사회 결의 전 위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임해야 한다. 감사위원은 업무감사의 하나로서 이사회 의사결정이 충분한 정보를 소화한 후 이루어졌는지 사후 검토할 의무가 있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각 회사의 이사회는 많은 서류를 보고받았을 것이며, 서류의 내용이 타당한 지에 대해 감사위원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이사회 의결에 외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들은 책임의 문제를 상당히 의식하면서도 시중 여론과 정무적 요소도 신경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항들이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 경감엔 거의 영향을 주지 못 한다. 어느 안건이라도 상기 원칙은 적용된다.

◇ **삼정KPMG ACI:** 이사회 의결 사안이 중대하다면, 해당 안건을 위해 이사회가 반복 개최될 수도 있으며, 이사회 내부에서 참여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라 예단할 수 있다. 상장사의 이사회 의결을 확인해보면, 동일 안건으로 수차례 개최된 이사회를 발견할 수 있다. 중대한 안건이기에 동일 사안으로 이사회가 반복 개최 되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내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이 특정 안건에 수정 내지 반대 의견을 내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활동을 알릴 방법은 없는가? 현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허나, 그 정보는 제한적이다. 물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전략과 관계가 있기에 세부 내용 전면공개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갈 것이며,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 **송옥렬 교수:** 후자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다. 이사회 의결과 관련된 공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질문에서 예시하신 바와 같이 이사회 의결에 노출되는 안건들은 경영과 직결된 건들이 많다. 그중에는 영업기밀에 준하는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공시 수준을 확대하자는

담론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안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술하는 건 다소 어려울 것이다.

전자의 문제를 다뤄보자. 이사회 구성원의 찬성과 반대 혹은 수정은 명확히 남겨져야 한다. 법적 공방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 다 다르면, 공시문건이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동일 사안에 이사회가 반복 개최되었다면, 의결 종국에 중지가 모였다 할지라도 도출 과정 중 참여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서상 자신의 반대를 문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의견이 다르더라도 논의를 하여 서로 설득이 이루어지면 중국에는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남기는 편이다. 더욱이 논란이 되는 의사결정이라면 반대의견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건에 찬성으로 일관하더라도, 자신에게 책임을 묻거나 내재한 소송 위험 등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만일 이 기대가 부정된다면, 우리 상장사의 이사회 활동은 상당히 변화할 것이다.

다만, 이사회에 찬성만 존재한다 하여 ‘식물 사외이사’ 내지 ‘거수기 사외이사’ 라는 비판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결 이전 이사회 구성원간 안건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사회 결의에 반대 내지 수정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본격적인 논쟁 이전에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이사회에 의 해 어느 정도는 견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 **삼성KPMG ACI:** 맞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실효성을 가진다면, 이사회 의결에 반대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려할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하나 세워보자. 향후 동 사안의 결정과정에 흠결이 확인된다면, 또한 최근 내부인이 미공개 정보를 유용한 사익 편취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은 일종의 내부통제의 미비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을 예상하는가?

◆ **송옥렬 교수:** 흠결이 가려진다면 민사 혹은 형사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내부인이 유용한 것에 위법사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 서두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언급되었는데 해당 제도가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움직임 중 하나이다. 또한 이사회 사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의결에 동조한 이사회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사위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편집: 삼성KPMG ACI 이민형 Manager(minhyunglee@kr.kpmg.com)



##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 - 투명한 회계를 위한 첫걸음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지현미 교수

### 계속되는 회계부정으로 '회계투명성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남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기업이 90% 이상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라는 것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기업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가 기억할만한 회계부정으로서는 1998년 대우그룹의 회계부정이다. 대우그룹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 맞물려,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였고 회계업계도 자정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SK글로벌, 2012년 저축은행, STX조선해양, 2013년 동양그룹, 모뉴엘, 2014년 대우조선해양 등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계부정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2016년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 및 감사 적절성 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도 평가대상 61개국 중 최하위 61위를 기록하였다.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의 정상화, 회계투명성 확보 필수조건이다.

회계부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의 주체가 되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감시체계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경영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할 감사인 선임도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자의 회계부정에 대해 엄격하게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감사인,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감사인 선택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결국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의 무관심과 정보비대칭 등으로 주주총회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경영자와 독립된 위치에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 회사와 감사인의 갑을관계,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기 어렵다.

자유선임제에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가 자기 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을 선택하게 되고, 회계감사의 대가인 감사보수도 회사가 최종 결정하고 지급하게 되므로 이해상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갑’이고, 감사인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와 감사인이 갑을관계인 상황에서, 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하고 회계부정을 적발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어렵게 되며 결국은 자본 시장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 현재의 감사인 자유선임제, 문제는 없는가?

회사는 회계감사의 대가로 지급하는 감사보수를 가능하면 적게 지불하기를 원한다. 자유선임제 하에서는 회사로부터 선택 받기 위해 감사인이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의 한 수단으로 낮은 감사보수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선임제 하에서는 가장 낮은 감사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회사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인은 낮은 감사보수로 인해 투입하는 감사인원과 감사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회계부정을 적발해 내기 어렵게 된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때 학연, 지연 등을 따질 수 있다. 회계정보는 기업의 내밀한 핵심 정보이고 회계정보 공시와 관련된 경영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영자가 제어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회계감사를 맡기고자 한다. 회사는 엄격하게 감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따라서 학연, 지연 등과 같이 친분이 있는 감사인을 찾게 되고, 그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깐깐하거나 엄격한 감사를 회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자유선임제 하에서는 회계감사를 엄격하게 하고,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감사인이 오히려 시장에서 배척당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잘 적발해내고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자유선임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2년부터 도입되었다. 감사인간 경쟁을 유도해서 감사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하였으나, 감사인의 과도한 경쟁과 독립성 훼손으로 오히려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하고 부실감사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새로운 감사인 선임방법의 모색,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한편, 1990년 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제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자유계약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감사시장에서 감독당국이 감사인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식이다. 지정해야 할 사유(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법인, 공개예정법인, 부채비율이 높은 법인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지정제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지정제가 자유선임제에 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켜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회계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회계부정이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관계, 현재의 자유선임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인 선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안으로는 혼합감사제(6년 자유선임제+3년 지정제), 이중감사제(하나의 회사를 두 감사인이 동시에 감사), 지정제 확대 등이 있다.

참고로, 2016년 10월에 발의된 외감법 개정안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제한적 지정제에서 지정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감사인 선임방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하지만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 투명한 회계를 위한 첫걸음.

2016년 10월에 발의된 외감법 개정안과 같이 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회사의 회계처리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회계처리 개선안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한 감사인보다 지정받은 감사인이 감사할 경우 감사품질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면 회계정보의 질이 높아지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고, 회사의 자금조달비용도 낮출 수 있다.

감사인 지정 대상이 확대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회계감사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감사인은 투철한 윤리의식과 전문가로서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 적절한 감사인력 및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있어서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는 기업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모든 국민이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기업의 회계정보는 거시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자본 시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계정보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 일반대중 등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회계부정의 최대 피해자는 선의의 국민들, 즉 투자자와 채권자들이며, 기업, 기업의 임직원과 고객, 감사인, 금융당국, 정부, 잠재적 투자자로서 일반대중 등도 회계부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인 선임방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향상시켜 선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가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경제와 금융이 제대로 되려면 회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신뢰도가 높아지고 국격이 높아질 수 있다.



## 회사 선택에 의한 감사제도 변경과 기존 감사의 거취 및 해임 시 배상 문제

삼성KPMG ACI 이민형 Manager  
(minhyunglee@kr.kpmg.com)

### 실무상담

- A사의 정관은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다르는 정기주주총회라고 규정하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B상근감사에게 3년의 임기를 부여하였다. B상근감사는 임기 내 감사활동에 하자가 없었으나, 회사는 유지 중인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을 개정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신규 도입하려고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활동은 활동 중인 B상근감사의 퇴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B상근감사는 퇴임 의지가 없다. 그래서 회사는 B상근감사의 이사회 감사활동을 고의로 제한하여 감사행위태만을 근거삼아 감사인 해임을 추진한 후,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려 한다. 이 경우 B상근감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또한 회사 선택에 의한 감사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B상근감사는 잔여 임기에 대한 연봉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분석

- 회사가 고의로 감사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제한하고 감사인 해임을 강행하였다면, 감사는 감사해임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때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으며, 회사 선택에 의한 감사제도 변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면, 감사는 잔여 임기에 대한 연봉 보전을 주장할 수 있다.

### ■ 관련 법령

- 상법 제385조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이사를 임기 만료 이전 해임한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게 해임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동법 제415조에 따라 감사에게도 준용
  -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sup>1)</sup>
- 상법 제376조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주주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함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의 활동을 회사가 고의로 훼방하였을 때도 효력을 발휘함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고

## 주요 지수<sup>1)2)</sup> 기업의 감사기구 설치 및 공시 현황

삼성KPMG ACI 이민형 Manager(minhyunglee@kr.kpmg.com)  
 삼성KPMG ACI 엄수진 S.Senior(sujineom@kr.kpmg.com)

- 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비율은 양 지수가 비슷하였으며, 전년대비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양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함

지수	감사기구	2015	2016
KOSPI 200 (t=200)	감사위원회	135(67.50%)	140(70.00%)
		사외이사 비율	95.86%
	상근감사	65(32.50%)	59(29.50%)
	비상근감사	0(0.00%)	1(0.50%)
KRX Governance Leaders 100 (t=100)	감사위원회	72(72.00%)	71(71.00%)
		사외이사 비율	96.76%
	상근감사	27(27.00%)	27(27.00%)
	비상근감사	1(1.00%)	2(2.00%)

- 채택하고 있는 감사기구를 막론하고, 양 지수 편입기업들은 보유 기구의 활동현황을 소극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지수	감사기구	공시	2015	2016
KOSPI 200 (t=200)	감사위원회	활동공시 존재	78(57.78%)	77(55.00%)
		활동공시 부재	57(42.22%)	63(45.00%)
	상근감사	활동공시 존재	13(20.00%)	16(27.12%)
		활동공시 부재	52(80.00%)	43(72.88%)
	비상근감사	활동공시 존재	0(0.00%)	0(0.00%)
		활동공시 부재	0(0.00%)	1(100.00%)
KRX Governance Leaders 100 (t=100)	감사위원회	활동공시 존재	42(58.33%)	42(59.15%)
		활동공시 부재	30(41.67%)	29(40.85%)
	상근감사	활동공시 존재	1(3.70%)	8(29.63%)
		활동공시 부재	26(96.30%)	19(70.37%)
	비상근감사	활동공시 존재	0(0.00%)	1(100.00%)
		활동공시 부재	0(0.00%)	2(100.00%)

1) 주요 지수는 한국거래소 내 대표지수인 KOSPI 200과 특수 지수인 KRX Governance Leaders 100 으로 선정  
 2) KRX Governance Leaders 100 지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ESG평가 3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지배구조점수가 개선되거나 우수한 1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2015년 12월 21일부터 산출. 지수산출은 지배구조점수가 높은 순서로 편입비중이 결정되는 지배구조점수 가중방식을 채택(Source: 한국거래소)

## 기업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이사회 구성 (Building a great board)

KPMG Global ACI

- Global ACI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 2,300명 이상의 이사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 출신, 경험, 가치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과 방해요소 등은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내용을 아래 표에 요약함

표1. Global ACI Survey “Building a great board” 설문결과 요약

### 기업의 경영전략에 부합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오늘날 비즈니스 및 리스크 환경을 고려할 때, 이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장·단기 전략 변화에 부응하는 책임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임
  - 응답자들은 이사회 인적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요구 증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이해를 갖춘 이사회 멤버에 대한 수요 증가, 급속한 기술변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가능성 등을 지적함

### 높은 성과를 내는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69%) 어려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업경험 뿐만 아니라 기업에 특화된 전문성까지 모두 갖춘 책임자를 물색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55%) 어려움은 미래 이사회에 요구되는 재능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는 것임. 43%의 응답자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고방식과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지적하였음

최적의 이사회 구성을 위해 이사회 승계계획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한 이사회는 많지 않음

- 대다수의 응답자는 적격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 공식적인 승계계획이 핵심장치라고 응답함. 그러나 응답자 중 31%의 이사회만이 공식적인 승계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계획 중 이라고 밝힘

### 최적의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들이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응답자들은 적격한 이사회 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서 명확한 이사회 평가제도(87%)와 공식적인 이사회 승계계획(77%)을 언급함.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수의 이사회만이 공식적인 승계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응답자의 33%는 고 성과 이사회를 운영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이사회 및 구성원 개인에 대한 평가제도의 부재와 저 성과 이사 해임의 어려움을 지적함

### 적격한 이사회 구성을 위한 변화와 쇄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본 설문결과는 이사회 승계계획, 구성 및 다양성에 대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즉, 이사회에서 장기전략을 논의할 때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라는 것임

■ 설문에 참여한 우리나라 이사(감사위원 포함)는 29명이었으며 이들의 답변을 아래 표에 요약함

표2. Global ACI Survey “Building a great board” 한국 응답자 설문결과

1. 현재 및 향후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가장 큰 우려사항은 무엇입니까? (3개 선택)	비율(%)
• 이사회 멤버들의 출신과 성향상의 다양성 부족	72
• 현 비즈니스 모델의 퇴화와 경쟁적인 위협 등장	55
• 기업의 3-5개년 경영전략에 연계 된 이사회 구성	52
• 국제적인 시각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부족	48
• 기술변화(Technical change)속도 부응	38
• 이사회 내 사이버 보안리스크에 대응할 인력 부재	17
• 현 이사회 구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	14
• 기타	3
2. 이사회 멤버들은 경영진의 수립한 전략에 내포된 대전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사회 멤버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경험과 출신배경, 전문가적 안목 등)	비율(%)
• 불만족	45
• 일부 만족	38
• 만족	17
• 기타	0
3. 높은 성과를 내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비율(%)
• 사업경험과 산업전문성을 겸비한 이사회 멤버를 영입	72
• 3-5년 후 이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	45
• 현상유지 성향(과거 방식이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과 변화에 대한 거부)	34
• 질문이나 자유토론을 꺼리는 이사회 문화	34
• 이사회와 개별 멤버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 미흡	34
• 저 성과 이사회 멤버 해임의 어려움	31
• 장기 재임하는 이사회 멤버의 (실질적 또는 외견상의) 점진적 독립성 상실	24
• 신임 멤버를 위한 효과적인 적응 프로그램 미흡	21
• 기타	3

<b>4. 이사회는 어느 수준에서 이사회 승계계획을 다루고 있습니까?</b>	<b>비율(%)</b>
•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원이 발생할 때 논의	55
• 이사회 승계계획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거나 없음	21
• 이사회 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승계계획을 수립 중임	17
• 공식적인 이사회 승계계획이 있으며, 미래에 이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연계되어 정기적으로 검토됨	7
<b>5. 이사회 구성 시, 전문기술, 배경, 경험 및 관점 상의 최적의 조합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b>	<b>비율(%)</b>
• 명확한 이사회 평가제도	86
• 공식적인 이사회 승계계획	79
• 임기 제한 (기간 또는 횟수)	34
• 평균임기 모니터링	28
• 연령 제한	21
• 이사회 규모(size)의 확대	41
• 기타	10
<b>6. 귀하의 이사회는 미래 이사회 역할 정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b>	<b>비율(%)</b>
•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	55
• 특정분야의 전문성*, 기술, 관점을 보유한 인물의 적극적인 영입 (*신기술, 사이버보안, 해외전문가 등)	52
• 이사회 미비점이나 低성과 멤버를 식별하기 위한 이사회 및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제도의 개선	34
• 신임 멤버의 적응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34
• 이사회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사항(needs)에 대한 평가	31
• 성과가 좋지 않은 이사의 해임	24
• 기타	0
• 해당사항 없음	0



# 일본 기업 부정 실태조사 (2016 Fraud Survey)

KPMG JAPAN

- KPMG Japan은 2006년부터 자국 기업의 부정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5회째 조사를 시행함
- 조사는 동경증권거래소 상장사 등 총 3,633개 회사의 재무 및 감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중 총 376개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응답률 10.3%)
- 응답회사 분류: 제조업 35%, 소매업/외식업 20%, 서비스업 15%, 정보통신업 9%, 건설업 6%, 금융보험업 5%, 부동산업 4%, 운송업 4%, 전기가공업 1%

## ■ 상장 기업 3개사 중 1개사에서 부정이 발생하고 있음

- 지난 3년 동안 기업 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이나, 해당 비율은 2008년 47%, 2010년 35%로 지속 하락하고 있음
  - 이는 각 기업의 내부통제와 감사체제 강화로 일궈낸 성과이나,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각 기업 경영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 ■ 부정행위는 주로 금전과 물품 횡령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각 기업의 부정행위의 60% 이상이 금전과 물품 횡령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도 30% 가량 집계되었음. 그 외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영업 기밀유출이나 정보 조작 행위, 제품표시 및 품질표시 위조 등도 소수 집계 됨
  -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과 관련한 부정행위의 80%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과다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발생함

## ■ 부정행위로 기업이 입은 손실액은 1,000만엔 미만의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함

- 기업 부정으로 인한 손실(제재금과 사업규제 등)의 63%는 1천만엔 미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18%는 1억엔 미만, 15%는 1억엔에서 10억엔 그리고 10억엔을 초과하는 손실은 4%로 조사 됨
  - 손실액이 1억엔 이상 부정행위는 대부분 뇌물공여와 담합으로 발생한 것임
- 임원급 부정행위자는 5명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4명은 회계부정에 연루되어 있었음
  - 임원급 미만 직군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80%가 횡령과 리베이트임

### ■ M&A 대상 기업의 비리가 존재 하였음

- 조사 대상 기간 내 M&A를 시도한 119개사 중 8%에서 비리가 발생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각 기업은 M&A 과정 중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유효 절차로 재무실사를 1순위(73%)로 꼽았으며, 그 뒤로 법무실사(57%), 이력조회(45%)를 선호하였음<sup>1)</sup>
  - 이력조회는 실사 과정 중 수집이 불가능한 경영진의 범죄 및 부정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향후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M&A 종결 후 인수 후 임원파견이나, 인수 후 통합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내제된 부정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집계됨

### ■ 부정행위는 ‘업무 처리 통제’ 수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됨

- 2010년 실시된 조사에서 부정행위는 내부보고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 된다고 집계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업무 처리 통제(62%)에 의해 가장 많은 부정행위 적발이 가능했다고 파악되었으며, 그 뒤로는 내부보고(47%)가 차지되었음
  - 업무 처리 통제 방식에 의한 부정행위 적발은 2008년 실시 조사에서 7% 응답되었고, 2010년 26%로 대폭 상승하였음
  - 이런 추세는 기업의 부정 발견이 단순 내외부 신고에서 벗어나 경영시스템 전산화 및 다양한 감사시스템 등의 업무 처리 통제를 통해 부정을 적발하는 것을 의미함
-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는 ‘속인적인 업무 운영<sup>2)</sup>’을 꼽은 기업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동 규범 등 윤리기준 교육 부족을 34%, 성과지상주의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압박을 32%로 지적하였음

### ■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감사 수단으로 CAAT(컴퓨터 이용 감사 기업)을 제일 많이 활용

- 일본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 부정 감시 시스템은 직원들의 컴퓨터 이용 감사기법 CAAT(29%), 이메일 감사(27%), 공무원 등 뇌물대상자 주변 감사(14%) 순이었음
  - 2010 Fraud Survey에서 CAAT를 활용하고 내부감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8%였지만, 2016 Fraud Survey에서 집계된 높은 CAAT의 활용은 다양한 IT 기술의 이용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중시됨을 의미함

### ■ 해외부정은 18% 비율로 발생

- 해외에서 부정이 발생한 비중은 2010 Fraud Survey에서 1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8%로 조사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해외 계열사 관리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임
- 부정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중국/동남아(50%), 북미(22%), 유럽(17%) 순이었음
  - 부정 동기로는 향후 실적 부담 및 실적 연동 인센티브 등의 주로 꼽힘

본 란에서는 KPMG Japan에서 실시한 “일본 기업의 부정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도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해 ‘인용’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복응답

2) 직무의 내용보다 학력이나 연령을 중시한 인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한 사람에게 업무를 모두 맡기는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음





## Audit Committee Institute

### 서원정 감사부문 대표

T. +82 2 2112 0630  
E. wsuh@kr.kpmg.com

### 김유경 ACI Leader, 상무이사

T. +82 2 2112 0639  
E. youkyoungkim@kr.kpmg.com

### 강환우 Senior Manager

T. +82 2 2112 7728  
E. hwanwookang@kr.kpmg.com

### 이민형 Manager

T. +82 2 2112 7854  
E. minhyunglee@kr.kpmg.com

### 엄수진 선임연구원

T. +82 2 2112 7608  
E. sujineom@kr.kpmg.com

## 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Vol. 01 | Jan. 2017 (통권 제1호)

발행인 삼정KPMG | 지은이 삼정KPMG ACI | 제작·인쇄 경성문화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06236)

전화 (02) 2112-7728 | 팩스 (02) 2112-3680 | 이메일 kr-fmsamjongkpmgaci@kr.kpmg.com

삼정KPMG ACI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kr/ko/home/services/aci.html>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본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